

구매 조건 - 대한민국

배타적 조건

이 구매 조건은 이 문서의 표지에 언급된 상품("상품") 및 서비스("서비스")를 지명된 제조자, 판매상, 공급자 또는 기타 매도인("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서 Kennametal Korea Ltd 또는 그 자회사, 계열회사 및 조직 내의 부문("매수인")이 제공하는 계약 또는 제안("계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체결된다. 계약은 계약의 표지에 언급됨으로써 포함되는 계획, 명세사항 또는 기타 문서와 함께, 이 계약의 조건으로 매도인의 수락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매도인은 그 수락에 있어서 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범위까지는 어떠한 조건도 제안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도인의 조건을 포함하는 문서 형태로 매수인에게 제안했는지 여부, 매도인이 이메일이나 유사한 전자 매체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조건을 보냈는지 여부, 또는 매도인이 기타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조건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매도인이 계약에 응해서 보내거나, 계약을 권유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보냈던 매도인의 견적, 확인서, 또는 기타 문서에 포함된 반대되는 취지의 규정들은 이 계약에 의해서 거절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조건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진술이고, 이 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제안, 확인 또는 서면 수락에 기재된 상충하는 조건을 대체하며, 오로지 양 당사자들이 체결한 서면증서로만 수정될 수 있다.

계약의 수락

매도인이 (a) 매도인의 서면 또는 구두 확인을 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거나, (b) 상품의 선적을 시작하거나, (c) 매수인을 위해서 특별히 제조되어야 하는 상품의 제조를 시작하거나, 또는 (d) 서비스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문번호

매도인은 모든 청구서, 선적 서류, 서신 및 컨테이너 상에 구매주문서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서

매도인은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항목별로 기재된 청구서를 발행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매수인의 구매주문서 및 품목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승인

매수인은 이것과 기타 정식 구매주문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의 계정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이행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격

이 계약의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가격은 이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되고, 그 표지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마지막으로 견적을 제시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에 견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타인에게 매도인이 제공하는 순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계약의 표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한, 포장, 나무상자 적재, 화물, 특급 또는 기타 운송업체 비용이나 짐차 운송료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계약에 기재된 가격에는 적용되는 모든 국가 및 지방의 세금이 포함된다.

지급조건

계약의 표지에 명시적으로 달리 기재되지 않은 한, 이 계약의 지급조건은 매수인이 정확한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적시에 및/또는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 손실 또는 가치 감소를 완화, 감소 또는 충족하기 위해서 적절한 모든 금액을 기한 도래된 지급액으로부터 상계하거나, 회수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매수인에 의한 그러한 상계, 회수 또는 유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기타 구제수단을 절충하거나, 감소시키거나, 포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락

이 계약에 따라 인도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이 그에 대한 매수인의 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계약의 대상인 상품을 검사할 수 있고, 매수인의 판단에 의할 때 결함이 있거나 이 계약에 기재된 그 명세서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검사

모든 작업(이 용어는 전체적으로 원재료, 절차 및 공정, 구성품, 중간 조립 및 최종 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제조 기간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 및 장소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그리고 어느 경우든 수락에 앞서서, 매수인에 의한 검사 및 테스트를 전제로 한다. 매도인은 계약의 모든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작업을 매수인이 검사하고 테스트했다거나, 매수인이 설계, 도면, 샘플, 테스트 결과, 절차, 공정 또는 일정을 승인했다는 것이 계약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제시키지는 않는다. 매수인은 이 계약과 관련해서 작업이 진행되는 시설이나 영업장에 합리적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특정한 보증이나 기타 보증에 추가해서, 매도인은 이 계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가 이 계약이 기초하는 명세서항, 도면, 샘플 또는 기타 명세서에 부합되고,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 적합하고, 상업성이 있으며, 양호한 재료와 기술로 이루어졌고, 결함이 없다는 점과 매도인이 설계한 상품 및 서비스는 설계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보증한다.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의 검사, 테스트, 수락 또는 사용은 이 보증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인은 더 나아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와, 매수인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용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특허, 저작권, 표장, 로고,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을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매수인에게 보증한다. 이 보증은 매수인, 그의 승계인, 양수인 및 고객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대해서도 적용된다.

결함 또는 부적격 상품 또는 서비스

매도인이 결함이 있거나 부적격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이나 형평법상 인정되는 기타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해서, (a)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상품을 반품하고 그에 대해서 지급된 대금을 매도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b)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락하고, 공평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c) 결함이 있는 재료나 서비스를 매도인이 그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즉시 교체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d) 다른 조달처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시간의 중요성

인도 시기는 이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침에 따라서, 또는 그러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상품을 선적하고 인도해야 한다. 매도인은 이 계약의 표지에 기재된 모든 생산 및 인도 일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확약하고 동의한다. 계약에 기재된 만기일은 매수인의 장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령되어야 하는 날을 의미한다.

인도 지침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수량을 선적해야 한다. 과도한 선적이나 승인되지 않은 선적은 매도인의 비용 부담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품할 수 있다.

계약의 표지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는 운임 선급의 본선인도조건 (FOB)으로 목적지로 선적해서 제공해야 한다.

상품이나 품목을 선적할 때, 매도인은 각 선적분과 함께 "포장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포장명세서"에는 매수인의 구매주문서 번호, 구매주문서 품목 번호, 선적된 품목의 명세서항과 수량이 기재되어야 한다.

권리 및 손실 위험

매수인의 계약 표지에 명시적으로 달리 기재되지 않은 한, 이 계약의 대상인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은 매수인에 의한 검사 및 수락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권리의 이전 전까지는 항상 모든 상품에 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모든 상품에 대한 양호하고 시장성 있는 권리가 여하한 담보, 장애 또는 부담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보증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증의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손해나 손실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해야 한다.

보험

매도인은 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사업 활동 및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상 책임, 제조물 책임 및 자동차 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을 포함해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보상책임보험, 고용주책임보험, 포괄적인 종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금액이 기재된 보험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변경

매수인은 명세서항 및 도면, 선적 지시, 수량 및 인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의 증가 또는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인도 일정 또는 양자에 대해서 공정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을 위한 매도인의 청구는 변경이 주문된 날의 삼십(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지

다음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별도의 책임 없이 이 계약이나 이 계약에 따른 특정 주문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의 지급불능, 매도인에 의한 파산신청의 자발적 제출, 매도인에 대한 파산 선고를 구하는 비자발적인 신청의 제출, 매도인에 대한 관리인이나 수탁자의 임명, 채권단을 위한 매도인의 재산양도약정 체결, 정부 기관에 의한 매도인 재산의

실질적 부분에 대한 점유, 또는 매도인의 통상적인 사업의 중단. 만약 매도인이 이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을 위협하게 할 정도로 이 계약에 따른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별도의 책임 없이, (i)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도인의 위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이 입는 모든 손해, 손실 및 채무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함), 또는 (ii) 이 계약에서 주문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조달처로부터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그로부터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절에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어떠한 사유로든 언제든지 삼십(30)일의 통지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매수인이 이 조항에 따른 종료를 선택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취합해서, 종료통지의 육십(60)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종료와 관련된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가능한 감사를 포함해서, 이 청구에 대한 검토에 따라서, 매수인은 발생한 모든 합리적 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한다.

불가항력

매수인은 "불가항력" 사유(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조치, 법규, 명령 또는 규정, 동맹파업이나 기타 노동 분규, 천재지변, 화재, 기후 조건 또는 기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고를 포함)로 인해서 인구나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으로 되는 경우에, 이 계약에 따른 인도를 위해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수 또는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도인이 자신이나 어떠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매수인 및 매도인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가능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다른 조달처로부터 유사한 제품을 구매할 의무는 없음)의 공급을 분배해야 한다. 그러한 분배가 상업적으로 비현실적인 경우에, 매도인은 매도인의 행동이나 태만에 의하지 않고 매도인에 의한 적시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가항력사유에 의해서만 오로지 야기된 불이행이나 지연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이나 인도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

매도인은 (a)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증의 위반, (b) 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위반, (c) 이 계약에 따라 구매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로부터 초래된 재산 손해, 인체 상해나 사망, 또는 경제적 손실, (d) 이 계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나 발명권의 실제적인 침해나 침해 주장(단, 이 면책은 해당 손해, 책임, 클레임, 손실 또는 비용이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사항을 매도인이 준수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또는 (e) 매도인, 그의 대리인, 직원 또는 하청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 행위 또는 태만의 결과로 매수인에게 발생하거나 매수인이 입는 일체의 손실, 손해(변호사 보수 및 비용 포함),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해서 매수인을 완전히 면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로 확약하고 동의한다. 매도인은 이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가

매수인의 타인에 대한 계약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매도인에 의한 자신의 이 계약에 따른 보증이나 기타 의무의 위반이 타인에 의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한 클레임, 소송 또는 절차에 기여하는 원인이나 요소가 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해당 클레임, 소송 또는 절차의 결과로서 매수인에게 발생하거나 매수인이 입는 일체의 손실이나 손해(변호사 보수 및 비용 포함)에 대해서 매수인을 완전히 면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로 확약하고 동의한다. 매수인은 이 계약의 이행 중에 매수인이 공급, 결정 또는 요청한 설계, 공정 또는 공식을 매도인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로서 매도인에게 발생하거나 매도인이 입는 일체의 손실, 손해(변호사 보수 및 비용 포함),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해서 매도인을 완전히 면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로 확약하고 동의한다.

배타적 권리

이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면, 명세사항, 원형 물품 또는 기타 명세서는 매수인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남으며, 매수인의 서면요청 시에는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매도인은 서면, 오디오, 비디오 또는 전자적 형태로 된 것인지 불문하고, 매수인을 위해서 개발되거나 이 계약의 주제 사항에 특유한, 모든 도면, 현장 메모, 명세사항,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문서, 자료 또는 작업 산출물("작업 산출물")은 매수인의 재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모든 작업 산출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동의한다. 매수인은 교체 부품의 제조 또는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품의 설치를 위해서 다른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이 계약에 따라 구매되는 상품에 대한 매수인의 설치, 작동, 유지관리 및 수리에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 매수인을 위해서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 계약의 주제 사항에 특유한 것이 아닌, 모든 도면, 현장 메모, 명세사항,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문서, 자료 또는 작업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의해서 상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그러한 도면, 현장 메모, 명세사항,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문서, 자료 또는 작업 산출물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이 조항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에 대한 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비밀준수

매도인은 명확하게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제공하거나 매도인이 준비하는 모든 정보, 도면, 명세사항 및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해당 정보, 도면, 명세사항 또는 데이터를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복사본을 만들거나 복사본이 만들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른 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 종료 또는 완료 후 오(5)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매도인의 모든 법률 준수

매도인은 이 계약의 전체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외국, 지방 및 지역의 법률과 포고 및 그에 따른 모든 적법한 명령, 규칙 및 규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계약이 이행되는 관할지역(외국, 국가, 구역, 주, 지방, 도시 또는 지역을 불문함)의 수입 및 수출,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법률, 조약,

규범 및 규정(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준수해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보증한다.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반대되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미국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금지되거나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나 미조치에 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사권

매도인은 이 계약에 따라서 이행되는 작업과 매수인에게 청구되고 매수인이 지급하는 청구액과 연관된 모든 장부 및 기록(인쇄본, 전자본 또는 기타 형태를 불문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장부 및 기록에는 (i) 변경사항 또는 추가 작업, (ii) 주문 가격의 허용되는 조정에 대한 청구, (iii) 매도인과 매수인의 직원들 사이의 접대, 선물 및 사업적, 재무적 또는 기타의 거래, (iv) 허용되는 종료 비용, 그리고 (v) 이 계약의 적용을 받는 기타 허용되는 청구액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해당 장부 및 기록과 계약에 관련된 기타 모든 매도인의 장부 및 기록은 계약의 존속기간과 그 후 이(2)년 동안 합리적인 영업시간 중에 매수인의 담당자에 의한 검사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 계약

이 계약에 적용되는 정부 관련 조항은 이 문서에 첨부되거나 기타 인용 수단에 의해서 이 계약에 포함된다.

권한, 구속적 효력, 양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자를 통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은 그 조건에 따라서 이행이 강제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상호 간에 확인하고 보증한다. 이 계약은 각 당사자와 그의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에 대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나, 이 계약의 이행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매도인은 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임무나 의무를 위탁해서도 안 된다. 매수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양도, 위탁 또는 하청도 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로부터 매도인을 면제하지 못하며, 양도일 전이나 후에 발생하는지를 불문하고,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표준적인 상용 공급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매도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권리 및 구제수단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의 규정을 주장하거나 이행 강제함에 있어서, 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체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그러한 규정,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대한 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는 완전히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한다. 이 계약에서 달리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수단은 중첩적이며, 당사자들이 법률이나 형평상 갖는 기타 권리나 구제수단에 추가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계약의 규정이 법률상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규정들은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

전체 합의, 의무의 효력 존속

이 계약과 이 계약의 표지에서 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기타 계약이나 문서는 그 주제 사항에 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사항 전부를

규정한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 확인, 보증 또는 양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계약의 수정이나 개정은 오로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정당하게 체결한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각 당사자는 각자의 보증, 면책 및 기타 의무가 인도 및 지급 후에도 효력을 지속하며, 최종적인 인도 및 지급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오(5)년 동안 효력이 연장되는 점에 합의한다.

준거법, 분쟁 해결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계약이나 그 종료 및 법령상의 클레임을 포함해서 내재적인 사업 관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분쟁을 포함해서, 이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여하한 성질의 일체의 분쟁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당시에 효력을 갖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SIAC 규칙")에 따라서 1명의 중재인 앞에서 싱가포르에서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해야 하며, 이 중재규칙은 인용에 의해서 이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판정부는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중재인의 판정에 대한 판결은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어느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일체의 분쟁은 그 분쟁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일(1)년의 기간 내에 이 계약에 따른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금지된다. 각 당사자가 해당 절차의 개시 이전이나 진행 중에 예비적 금지명령이나 기타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 계약에 따른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인정되는 기타 모든 구제수단과 절차를 대신한다.

당사자에 의한 완전한 검토 및 합의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해했으며, 상호 간에 그에 대해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인정한다.